

2장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2.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개요
- 2.2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FAQ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결격사유 조회제도

결격사유 조회제도 연혁

- ▶ 신원증명발급지침(내무부 예규) 제정('72. 3.)
* 일제시대부터 호적지에서 결격사유기록 관리, '63년경부터 신원증명서 발급
- ▶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내무부 예규) 시행('94.1.) *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기관 간 확인제도'로 변경
- ▶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 폐지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시행('12.7.)**
※ '1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국무총리승인 '12.1.) 중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민원지침에 포함, 운영 중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지침)

(목적)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결격사유 중 민감한 정보인 ①파산선고사실, ②후견등기사실, ③수형사실을 정확하게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신속하게 회보하여 행정의 신뢰성 증진하기 위한 것임
→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서 결격사유를 조회 후 조회 요청 기관에 통보함

결격사유 조회 가능한 사무

인허가·채용·취임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적근거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무만 가능

*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규칙,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조회 불가능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결격사유 개요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 등의 법을 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각종 인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영업·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

※ (결격 대표유형)

- ① 무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② 피산선고자, ③ 형사처벌 이력,
- ④ 자격상실·정지, ⑤ 인·허가 취소 이력, ⑥ 기타(정신질환자, 국적 등)

*2013년 민법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용어 변경

결격사유조회란?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결격사유 예시-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결격사유 개요

(결격사유 예시-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등록기준지가 관리하는 결격사유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 결격사유 보유·관리 현황

①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는 5년)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관리근거)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관리절차) ② 변동사실 발생 시 해당 사실 통보(검찰→등록기준지)
 - (관리근거) ③ 수형인명표 통보(검찰→등록기준지)

② 파산선고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관리근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 (관리절차) ① 파산선고문 통보(법원→등록기준지)

- ② 변동사실 발생 시 해당 사실 통보(법원→등록기준지)
- ③ 파산사실 현행화·관리(등록기준지)

③ 후견등기사실: 「민법」 제9조 ~ 제14조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관리근거)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에 위임
*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권한의 위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 과거(~'13.7.) 후견사항은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3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현재는 개정된 민법('13.7.~)에 따라 성년후견 등을 별도 등기부에 기록 중이고,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 가능*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증명서' 기재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범죄경력 조회 개요

범죄경력 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하는 것(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 구류/과료/몰수)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물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 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범죄경력 조회는 법령에서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 조회 · 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 · 국적회복 ·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일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 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범죄경력 조회 – 취업제한 – 근거법령 예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행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3.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 교습소 및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0)하 생략)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성범죄경력 조회 – 근거법령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성범죄경력 조회 – 조회 대상자 본인 등의 서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관련 근거서식 : [e하나로민원 > 공지사항](#)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 share.go.kr/index_ssl_www.html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정보열람 청탁·권한관리 분임공동이용관리자 공동이용관리자 보유기기판단장 수수료관리 보안관리 열람청구관리 통계/이력 정보센터 관계설정

01을사무현찰 정보01울현찰 권한부여현찰 출직자로할린현찰

정보센터

▣ 공지사항

상세 | 조회

공지사항

제목 [필독] 범죄경력 유무 조회 사전동의서 청구 안내

자주묻는질문

제시기간 2020-04-22 ~ 2024-12-31

문고답하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52 회

자료실

이용자교육

안녕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에게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를 동시에 조회하여 관련 범죄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별지 제12호의4서식]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15.5 KB) [다운로드수 : 623 회]

첨부파일2 [별지 제12호의5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16.0 KB) [다운로드수 : 1147 회]

첨부파일3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15.5 KB) [다운로드수 : 409 회]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결격사유조회와 범죄경력조회 차이점 비교

구분	자료출처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수형사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대검찰청(군검찰)	○	○
벌금형	경찰청	X	●
파산선고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법원	○	X
후견등기사실 (민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대법원	○	X
*등록된 관련 법령(2020년 11월 현재)		456개	341 개

- 수형사실: 자격정지 이상의 형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구류·과료
- 파산선고사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후견등기사실: 성년후견(舊 금치산), 한정후견(舊 한정치산)의 심판을 받은 사실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결격사유 유무조회 사무범위와 범죄경력 유무조회 사무범위 비교

구분	조회 가능한 범죄 범위	파산	후견(무능력)
결격사유 유무조회	<p>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조회 가능 (벌금형 이하는 등록기준지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등록기준지가 회신하는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나타나지 않음)</p> <p>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p>	<p>조회 가능</p>	<p>조회 가능</p>

-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상 결격사유조회 업무와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별개의 사무이며 각 사무 권한별로 조회되는 사실의 범위가 다름. 결격사유조회 사무 권한만 받으면, 벌금 이하의 범죄경력은 조회되지 않음
- ▶ 성범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하의 결격까지 조회해야 하는 법정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사무 권한을 추가로 받아 벌금형 이하의 범죄경력까지 조회하여야 함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각각의 조회 권한을 모두 받아 통합조회메뉴를 사용하여 양 사유 동시 조회 가능)
- * 결격사유조회 회보: 결격 유/무뿐 아니라 결격사유(Y)가 회보된 경우 상세내역이 회보서 형식으로 조회, 출력되지만, 범죄경력조회 회보: 결격 유/무 확인 후 범죄경력유(Y)가 회보 된 경우에도 상세내역은 확인만 가능 회보서 형식 조회, 출력 불가

2.1.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개요

유사제도 비교

구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근거법령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보안업무규정
처리기관	- 등록기준지(시구읍면)	- 경찰서	-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운영목적	- 인허가, 공직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필요시 - 인허가, 공직임용 등 결격사유 확인 - 외국 입국, 체류 허가 등 필요시	- 공직임용,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등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조사
조회범위	- 파산 - 후견등기 -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	- 범죄경력 : 형벌,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수사경력 : 벌금 미만의 형, 불기소처분 등	- 재산, 가족관계, 친교인물, 인품, 및 소행 -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 국적변동 내역 - 범죄경력 및 상벌내역 등
비 고	- 실효되면 기록 폐기	-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전까지 관리	

2장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2.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개요
- 2.2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FAQ



교육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1. 결객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담당자의 개인용 컴퓨터 등록

신규 결객조회·범죄경력조회 사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용컴퓨터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용컴퓨터등록은 정보열람을 시작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e하나로민원 파랑색 메뉴바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용컴퓨터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e하나로민원을 사용하여 정보열람을 하려고 하면 **개인용컴퓨터 등록을 하도록 알림장으로 알려줍니다.**
이 안내에 따라 개인용컴퓨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용컴퓨터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e하나로민원 로그인 후, 파랑색 메뉴바의 보안관리> 개인컴퓨터 사용 신청 화면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① IP주소 항목의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선택합니다.
- ② 컴퓨터명은 담당자 본인 이름 입력합니다.
- ③ 외부망 컴퓨터 사용 등 컴퓨터를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면 최대 5대 컴퓨터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1대 이상의 경우 컴퓨터명은 업무담당자 이름 뒤에 숫자입력)
- ④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면, 개인컴퓨터 등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고) e하나로민원 개인용컴퓨터 등록 반납 방법

- ① 과거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상태 항목을 “승인”으로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 ② 반납할 컴퓨터를 선택 후 “반납”버튼 클릭



교육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2. 결격사유 유무조회 권한 또는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열람권한) 신청 및 승인

결격사유 유무조회 권한 신청승인 절차와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 신청승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아래 질문에서는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주의) '벌금' 형 경력까지 조회가 가능한 권한은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입니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권한만 신청하면 벌금형 경력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양권한을 모두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벌금 내용을 잘 살펴 양자 모두 신청하세요.

양권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① 파랑색 메뉴바 접근권한관리>열람권한신청 및 결과조회 화면에서 열람권한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 ② 이용사무명 항목에 '범죄' 등 주요단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결과에 '범죄경력 유무조회' 가 목록에 보입니다. 검색결과목록에서 '범죄경력 유무조회' 사무명의 링크를 클릭하면 열람권한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시스템 상의 신청절차와 병행하여 분임공동이용관리자와 부서로 범죄경력 유무조회 사무에 대한 접근권한 승인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공문을 임파일에는

1. 접근권한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서식 6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약서(동 지침 별지서식 7호)
3. 신청자가 소속된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열람권한신청 화면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메뉴에서 담당업무는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범죄경력 유무조회가 필요한 업무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기간제 교사 채용, 방과후 교사 채용) 화면 제일 아래부분의 '열람권한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④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파랑색 메뉴 바의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열람권한승인> 열람권한승인 탭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내역 및 수신된 공문의 업무분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처리담당자에게 접근(열람)권한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세요.

분임관리자는 범죄경력 유무 조회와 무관한 업무의 담당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면 반려를 선택하여 불허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3.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 자동 반납(회수)

어제까지 결격사유 유무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의 열람 권한이 있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권한이 자동으로 반납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당초의 권한부여단위를 조정, 변경한 경우 권한이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경우 권한이 자동으로 반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한부여단위(일반적으로 과 단위)가 변경된 경우도 권한이 자동 반납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한부여단위에 맞게 권한을 새로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다수건 조회 시 에러발생

다수건 조회를 신청하려고 엑셀 파일에 대상자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수행하는데 검증이 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에서 업로드하는 대상자 엑셀(xls) 파일의 경우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엑셀파일을 업로드 할 때에는 암호를 해제하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암호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이용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문서에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잠시 보안프로그램을 중단하시거나 종료 하셔서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5. 범죄경력 유무조회 하지 않고 결격사유 유무조회만 별도로 할 수 없나요?

저는 결격사유 유무조회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 유무조회 열람 권한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격사유만 열람하고 싶은데 결격·범죄 통합조회 기능에서 근거 법령을 선택하면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결격사유만 조회할 수는 없는지요?

결격사유만 조회되는 법령도 있고 범죄경력만 조회되는 법령이 있으며, 결격사유·범죄경력 모두 조회되는 법령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시스템 상 각 근거법령 별 조회가능 범위는 이미 법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확인하려면, 근거 법령 선택 화면에서 ‘법령구분항목’에 ‘결격’, ‘범죄’ 표기 아이콘이 한 개만 보이는지, 양자가 다 보이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개의 아이콘이 모두 보인다면 해당 법령은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양자 모두 조회할 필요가 있는 법령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거 법령이 ‘결격’, ‘범죄’ 양자의 근거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히 본인의 업무 특성 상 한가지만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근거 법령 선택 화면의 조회 요청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한가지만 선택하여 결격사유, 범죄경력 중 한가지만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6.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양자를 동시에 조회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특정 법령을 근거로 한 명의 대상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였더니 결격사유조회 처리결과가 유(Y)로 표시되고 범죄경력조회 결과는 무(N)로 표시됩니다. 왜 결과가 다른가요?

결격사유 유무조회의 경우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회보 처리자가 회보를 요청한 근거법령에만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적으로 회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준지에 조회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형, 파산, 후견등기 등의 사유를 전체를 회보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가 유(Y)로 회보되었더라도 대상자가 바로 결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회보서에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폐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는 모든 항목(수형, 파산, 후견등기) 표시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회보를 받은 업무처리담당자는 그 회보서 내용을 잘 읽어 본 후 적용되는 결격의 근거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결격인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에 범죄경력 유무조회의 경우, 관찰 경찰서 담당자가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범죄 내용만 선별하여 회보합니다. 범죄경력 유무조회의 회보서는 이미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별하였기 때문에 업무처리담당자는 회보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 유무조회에서 처리결과가 유(Y)가 표시되었더라도 범죄경력 유무조회에서는 무(N)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7.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근거 법령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근거 법령 목록에 해당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근거 법령을 추가할 수 있나요?

결격사유 근거법령을 추가하려면 “행정안전부 공동데이터유통과”로 근거 법령 추가 요청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후 근거 법령을 등록합니다.

범죄경력 근거법령을 추가하려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로 근거 법령 추가 요청 공문을 보내면 **경찰청**에서 법령 검토 후 근거 법령을 등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하나로민원 시스템 교육자료실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기능 개선 매뉴얼”의 “⑥ 근거법령 추가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8.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요청하였는데 계속 ‘검증중’으로만 표시된다면?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요청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모두 회보했다고 하는데 화면에서는 계속 “검증중”으로만 표시됩니다. 어떻게 해야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사유 유무조회의 경우 조회 요청 후 즉시 유(Y), 무(N) 결과가 조회되지만,

범죄경력 유무조회의 경우 조회를 요청하면 그 요청은 관할경찰서로 이관되고, 관할경찰서 담당자가 회보 처리를 한 후에야 유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조회를 요청한 직후부터 처리결과는 “검증 중”으로 표시됩니다.

“검증 중” 단계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조회 요청이 관할 경찰서로 접수된 상태를 의미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결과를 회보하기 전까지는 결과 확인이 불가합니다.

(주의) 다만,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처리했더라도, 업무처리담당자가 범죄경력 결과 조회 화면에서 “검증결과수신”버튼을 눌러야 회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FAQ

9. 외국인에 대하여 결격사유 유무조회나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할 수 있나요?

결격사유조회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에 통보되어 관리되는 결격정보들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등록기준지가 없는 사람(외국인)의 정보는 조회할 수 없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외국인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범죄경력 중**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경력사항은 경찰청에 공문으로 문의하시면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